### 전주한일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선거 규정

####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학생회장단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 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회장단 선거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2인의 선거로 한다.

####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 1. 학생회장단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전주한일고 당해 년의 대의원회 중에서 학생회장단 선거 담당 교사(이하 "담당교사")와 학생회의 협의를 통해 7~14인을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전 학생회 학생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이전 학생회 학생부회장으로 위촉한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6.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 등록 관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 ②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홍보에 관한

일

- ③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④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 9.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중립의 의무를 다한다.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 제 4조 (선거일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4 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5조 (선거권자) 학생회장단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 제 6조 (입후보자격)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부회장은 각각 2학년 1명과 1학년 1명)에 재학 중인 학생
- 2.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 3. 학생회장 후보와 2학년 학생부회장 후보는 성별이 다른 학생

#### 제 7조 (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 1. 교칙위반 및 기타 사유로 현재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2. 입학 후 교칙위반 및 기타 사유로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 3. 입학 후 미인정 출결(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5회 이상인 학생

#### 제 8조 (투표자명단 작성)

- 1. 담당교사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 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2. 담당교사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과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 제 9조 (후보자 등록)

- 1.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 ② 담임교사 추천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 ③ 학부모 동의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 ④ 후보자 서약서(붙임 제 7호 서식) 및 지원동기(붙임 제7-1호 서식) 각 1 부
- ⑤ 선거지원활동 명단(붙임 제8호 서식) 1부
- ⑥ 후보자 공약서(붙임 제9호 서식) 1부
- 2.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지정된 날짜에 공고(붙임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약심사제도)

- 1. 위원회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가 능성 등을 심사한 후,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공약변 경을 권유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공약변경 권유 시 후보자는 해당 공약을 적절히 변경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권유에 이의가 있을 시 후보자는 선거 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담당교사는 교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공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 다음 날까지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위원회와 당해 후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1조 (등록무효와 사퇴)

- 1.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 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 정한다.
-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붙임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거운동)

- 1. 선거운동기간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에 진행한다.
- 2.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3. 선거운동은 선거규정에 정해진 방법으로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원회가 인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4.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 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7-1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결정한다.
- 6. 후보자 간 회의 및 의견 조율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원회가 공석한 자리에서 조율을 진행하며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1.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후

보자 홍보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를 작성하여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게시판이나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한다.

#### 제14조 (소견발표회)

- 1.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와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과 공약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2.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 3.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 4. 개인 소견 발표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5조 (어깨띠·피켓, 장비 등)

- 1.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 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사용하는 홍보 장비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2. 선거운동 용품은 사용한 금액과 수량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구매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 3.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학생의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대행사에 의뢰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 4. 선거운동용품으로 음향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결정한 방법과 방식을 따른다.

#### 제17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1.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 ① 경고사유의 행위
- 선거규정을 고의성이 없이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후보자 간 합의된 사항을 고의성이 없이 경미 하게 위반한 경우
- 고의성이 없이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하거나 선거운동의 시간과 장소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②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후보자간 다툼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사이버 상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및 등록무효 사유 행위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일려야 한다.

#### 제18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비용이 초과된 경우는 개별 후보가 부담하도록 한다.

#### 제19조 (투표)

- 1.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투표용지(붙임 제13호 서식)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다.
- 3.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투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
- 5.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6. 후보자는 투표실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7.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시정해야 한다.
- 8.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9.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제20조 (개표)

- 1. 위원회는 개표소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2.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3.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5.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④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⑤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6.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①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②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③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제21조 (당선인 결정)

- 1.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후보자 등록마감 후 회장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등록 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 3. 개표종료 직후에 담당교사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및 위원회, 개표참관인의 확인을 받은 후 즉시 발표한다.
- 4. 당선인에 대하여 담당교사는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22조 (재선거)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2. 재선거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3조 (보궐선거)

- 1. 학생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 거 여부를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부회장이 공석일 경우는 따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2. 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부회장 중 선임학년이 회장이 되고 후임학년이 부회장이 된다.
- 3. 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4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1.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한다.
- 3.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담당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반영한다.

#### 제25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17조 제1항의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26조 (보칙)

- 1.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포장하여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이를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3. 이 규정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교직원회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4. 개정된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41대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 명단

##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선거관리위원장			_	_
선거관리부위원장			-	_
제1선거구 위원				
제2선거구 위원				
제3선거구 위원				
제4선거구 위원				
제5선거구 위원				
제6선거구 위원				

■ 선거구역 : 각 학년 지정 투표소에서 실시

## 2025학년도 제41대 학생회장단 선거일 공고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 일정 및 입후보 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거 일정

내용	일정	비고
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6월 19일(목)	등록마감 2025.6.25.(수)
	~ 2025년 6월 25일(수) 2025년 7월 10일(목)	PM13시20분까지 시간엄수
선거 운동 기간	~ 2025년 7월 15일(화)	
입후보자 연설	2025년 7월 16일(수)	시간(5교시),
		장소(시청각실 또는 4층)
투표 및 개표	2025년 7월 16일(수)	시간(6~7교시)
T# 3 11#	2023년 7월 10일(十)	장소(각 투표소)
당선인 공고	2025년 7월 16일(수)	개표결과 후 즉시발표

2. 선출 인원 : 회장 1명, 부회장 2명

3. 선거 방법: 민주주의 4대 선거원칙에 따른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 4. 입후보자 자격

- 1) 공고일 현재 본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학생회장 후보와 2학년 학생부회장 후보는 성별이 다른 학생)
- 2)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 3) 입학 후 출석정지 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4) 미인정 출결(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5회 미만인 학생

#### 5.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선거 자문위원에게 제출)

- 1) 학생회장단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학생회장단 입호보자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3) 학부모 동의서 1부
- 4) 후보자 서약서 1부
- 5) 지원동기 1부
- 6) 선거지원활동 학생 명단 1부
- 7) 공약서 1부

2025 년 6 월 17 일

## 제 대 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자 명단

### 1학년 남학생

11	반	21	<u></u> 반	31	 반	4	<u></u> 반	5	 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1학년 여학생

1	반	21	반	31	<u></u> 반	41	<u></u> 반	5	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2학년 남학생

1	반	21	반	31	<u></u> 반	41	<u></u> 반	5	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2학년 여학생

1	<u></u> 반	21	<u></u> 반	3	<u></u> 반	41	<u></u> 반	51	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3학년 남학생

1	반	21	반	31	<u></u> 반	41	<u></u> 반	5	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3학년 여학생

1	반	21	반	31	<u></u> 반	41	<u></u> 반	5	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총원	명

전주한일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구 분	학생(부)회장
성 명	
학 번	

20 년 7월 일 실시하는 제 대 학생회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1.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2. 학부모 동의서 1부
- 3. 후보자 서약서 1부
- 4. 지원동기 1부
- 5. 선거지원활동 학생명단 1부
- 6. 공약서 1부

20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인)

## 담임교사 추천서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생 대표로 제반 자격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20 학년도 학생(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담임: (인)

### 학부모 동의서

성 명: 전화번호:

> 위 본인은 보호자로서 가(이) 전주한일고등학교 학생(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 년 월 일

학 번:

성 명: (인)

보호자: (인)

# 서 약 서

학 번 :

이 름 :

위 본인은 20 학년도 학생회 (부)회장 후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일 것을 서약합니다.

- 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폭력, 상대후보 비방, 인신공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정치적 발언 및 학생을 선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후보로서 타 학생의 귀감이 되며,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학생으로서 올바른 민주주의 선거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선거 후에도 선거와 관련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5. 교칙과 학생회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후보자: (인)

## 지원동기

			1 2 0 1	
학생회장	후보자		학생부회장 후보자	
인 적 사 항		학 번		
친색/	ነ %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핸드폰 (본인)	
e-mail				
			지원동기	

## 선거지원활동 학생명단

구 분	학 번	성 명	비고
학생회장 후보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운동원을 위촉하고 명단을 제출합니다.

순번	학 번	이 름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20	녆	월	일
$\angle()$	57	73	F

후보자 성명: (인)

## 공 약 서

학생회장 후보자	후보자 후보자
-> ->	
학 번	
성 명	
공약니	]용
1.	
2.	
3.	
4.	
5.	

## 후보자 등록 공고

20 학년도 전주한일고등학교 제 대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등록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후보등록자 명단

기호	학생회장		부회장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 년 월 일

## 후보 사퇴서

성 명:

사 유:

20 년 7월 일 실시하는 제 대 학생회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하고자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번:

성 명: (인)

보호자: (인)

## 후보자 사퇴 공고

# 아래와 같이 후보자 사퇴를 공고합니다.

후보 기호: 후보 이름:

사퇴 사유:

20 년 월 일

대	학생회장	선거	투표용지
1			
2			
턴	전주한월고	野学団	선거관리 위원장

# 전주한일고 제 대 학생회장선거 당선 결과 공고

20 학년도 전주한일고등학교 제 대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당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득표율	기호	학생회장		부회장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 년 월 일